



##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칙

규정번호	3-1-1
제정일자	2007. 12. 10
개정일자	2019.03.01
개정번호	Ver.7
총페이지	3

**제1조(목적)** 학교법인 동양학원 정관 제31조의 17에 의거 동양미래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(이하 “평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평의위원회 구성)** ① 평의위원회 의원은 대학의 장이 위촉하며, 의원의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의원의 단위별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0.03.25.>

1. 전임교원 대표 4명
2. 일반직원 대표 2명
3. 학생대표 1명
4. 외부인사 4명

② 평의회는 매 학년도 개시 2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03.25.>

③ 평의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. 단, 임기만료 전까지 차기 평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는 차기 평의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한다.<신설 2010.03.25.>

**제2조의2(평의위원회 기능)**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.<신설 2010.03.25., 2015.06.19.>

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3조(평의위원회 의장 등)**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
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.<개정 2010.03.25.>

④ 회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

**제4조(평의원 추천 등)** ① 제2조의 평의원 중 교내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.

<개정 2010.03.25., 2015.06.19.>

1. 전임교원 대표 의원은 교수회 회의에서 선출한다.
  2. 일반직원 대표 의원은 직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.
  3. 학생대표 의원은 학생회 회칙이 규정하는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.
  4. 외부인사 의원은 학교의 장이 선임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한다.
- ② 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1항에 의거 보궐 위촉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평의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5조(평의원의 자격)** ① 평의원회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정당의 당원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.

<개정 2010.03.25.>

- ② 정관 제31조의 11 제1항 제1호, 제2호의 의원은 전임 교·직원이어야 한다.
- ③ 의원은 타 대학(교)의 평의원 또는 타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한다.

**제6조(평의원의 자격상실)**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
1.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 의원이 퇴직 또는 휴직한 때
  2. 학생대표의원은 휴학, 졸업, 전학 또는 퇴학한 때<개정 2010.03.25.>
  3.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  4. 정관 제31조의 11 제1항 4호 의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- ② 제1항 제4호는 평의원회 의결로 총장이 해촉한다.

**제7조(회의 및 회의소집 등)** ① 평의원회 회의는 총장이 요구하는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10.03.25.>

② 총장은 필요시 관련 회의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<신설 2010.03.25.>

③ 의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함께 회의 개최 공고를 하고, 이를 각 의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10.03.25.>

**제8조(회의록)** ① 평의원회 회의록은 의장 및 출석의원 전원의 서명, 날인을 받아 비치한다.<개정 2010.03.25.>

②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, 회의록의 게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0.03.25., 2019.03.01.>

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공개될 경우 평의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03.01.>

**제9조(개정)** ① 이 규칙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.  
<개정 2010.03.25.>

② 개정된 규칙은 총장이 공포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개정 2010.03.25.>

**제10조(운영경비)** 대학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외부의원 회의비를 지출할 수 있다 <개정 2010.03.25., 2019.03.01.>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 
(2) (경과조치) 이 규칙 개정 당시의 평의원회 의원들의 임기는 201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 
(2) (제2조의2 제4호의 자문 범위) 대학평의원회에서는 교육과정 정책과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문하고,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